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10. 23 선고 2023가단12475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

피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도

담당변호사 김민정

변 론 종 결 2024. 9. 11.

판 결 선 고 2024. 10. 23.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B 사이에 2023. 9. 26. 체결된 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가. 소외 주식회사 B에 피고가 가지는 수원지방법원 C 배당절차의배당금지급청구채권 전부에 대하여 양도 의사표시를 하고,
나. 대한민국(소관 : 수원지방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그 양도의 취지를 통지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6. 9. 5. 소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5천만 원에 대하여 신용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9. 7. 18.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51,063,356원(원금 5천만 원, 이자 1,063,35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2019. 7.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소외 회사 및 그 대표이사 D을 상대로 위 나.항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권에 기하여 ‘51,796,916원 및 그 중 51,063,365원에 대하여 2019. 7. 28.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2019차전9203)을 발령받아, 같은 해 8. 30. 확정되었다.

라. 소외 회사는 2023. 9. 26. 피고에게 플라스틱 원료 외상대금 채무 지급에 갈음하여, 소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원료물품대금 25,848,240원을 양도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23. 9. 26. E에 채권양도통지서가 송달되었다.

이에 원고는 2023. 10. 4. 수원지방법원에서 채무자를 소외 회사, 제3채무자를 E로 하여 채권액 77,473,960원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23타채138266)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23. 10. 10. E에 송달되었다.

마. E는 2023. 12.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피공탁자를 피고와 소외 회사, 공탁금액을

25,848,240원으로 하여 위 라.항 기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았다고 민사소송법 487조 후단, 같은 법 248조 제1항에 기하여 공탁하였다(2023년 금 제3237호).

바. 원고는 2024. 3.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채무자를 피고,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 피보전권리를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으로 하여 위 마.항 기재 공탁으로 인한 수원지방법원 C 배당절차 사건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받을 배당금에 대한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2024카단10648)을 받았다(위 배당절차는 2024. 4. 15. 채권양수인인 피고에게 공탁액에서 집행비용 35,440원을 제한 25,841,321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종결되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

1) 원고 주장 요지

소외 회사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는 소외 회사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피고는 처분금지가처분된 배당금 채권에 대하여 소외 회사에 양도한다고 대한민국에 통지를 하여야 한다.

2) 피고 주장 요지

이 사건 채권양도는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 행위에 갈음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이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

앞서 본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2) 채무 초과 여부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 당시 피고는 E에 대한 위 원료물품대금 채권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가 있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고,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52416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 당시 이미 그 채권액을 초과한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와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반해 E에 대한 위 원료물품대금 채권 외에는 달리 적극재산이 없었던 사정, 이 사건 채권양도를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피고의 선의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F이라는 상호로 방수시트 판매업을 하는 피고가 2021. 7.경부터 소외 회사와의 계속 거래를 하여 왔으나 대금 지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있고 소외 회사는 계속 독촉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채권양도일 기준 외상대금액이 83,027,900원이었음을 주장함에도 소외 회사와의 거래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할 뿐 실제 그 잔존채무액이 그에 달한다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아 소외 회사의 사업상 발생하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 당시 소외 회사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의 약의 추정이 반복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써 피고는 소외 회사에 피고가 가지는 수원지방법원 C 배당절차의 배당금지급청구채권에 대하여 양도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 수원지방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그 양도의 취지를 통지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혁재

별지